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50
------	----

제출일자 : 1998. 12. 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제정이유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 기금의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예치방법 기금의 집행 증식등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용도를 노인복지증진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또는 활동 목적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
 -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담당주사
-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②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 문화 선양

2. 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 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
- 2. 기금출납원: 가정복지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